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979
----------	-------

발의연월일 : 2026. 2. 24.

발 의 자 : 강명구 · 임종득 · 김태호
서지영 · 신동욱 · 구자근
김재섭 · 김승수 · 박성훈
조은희 · 김용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8년 제정된 현행법에 따라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함.

한편 현행법 제정 당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은 기존에 건축물등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자에 대하여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서 2026년 4월 17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음.

그런데 유예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서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들이 대거 실직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이들 대부분이 50대 이상 고령이라는 점 그리고 현장 경력이 풍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3년간 추가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2029년 4월 17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유예기간 만료에 따른 혼란과 갈등

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설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에 관한 특례) ① 제19조제1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는 건축물등에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하여 2029년 4월 17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한 선임·해임·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 제19조제2항부터 제18항까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8일부터 2026년 4월 17일까지 같은 건축물등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9조의2(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에 관한 특례) ① 제19조 제1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는 건축물등에 기계설 비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 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임시 기계설비유지 관리자로 선임하여 2029년 4월 17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임시 기계설 비유지관리자에 대한 선임·해 임·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 제 19조제2항부터 제18항까지를 준용한다.</u>